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2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6. 3. 12.
3. 회 부 일 : 2026. 3.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째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허가 및 토지보상 지연,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문화재 발굴 등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

적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 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 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장기계속계약 총계약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를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서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하고,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u>통제범위를 벗어난</u>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u>계약기간</u> 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책임 없는</u> ----- ----- <u>계약기간(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u>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지자체장등”이라 함)이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을 통해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¹⁾.

계속비계약은 사업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인 반면 장기계속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되 각 연도별 소요 예산에 대해서만 매년 의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임. 이에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첫째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공공계약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

1)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하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비교>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계약방법	총액으로 입찰하고, 연차별 별도 계약 체결	총액으로 입찰·계약 (연부액 부기)
	당해연도분만 확보→차수공사 진행 (각각 별건 계약)	연도별 금액 설정 (1건의 계약)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24	「대한민국 헌법」 2)§55, 「지방재정법」 §24, 「지방계약법」 §24
지방의회 의결	연도별 금액	총액 및 연도별 금액
총예산 확보	미확보(당해연도 예산만)	확보
이행기간	제한 없음	원칙 5년(필요시 의결로 연장)

그런데, 계속비계약에서 인정되는 총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이 장기계속계약에서도 적용되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및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계속비계약의 경우 태풍, 홍수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가 발생하여 총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³⁾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총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 조정 근거

2)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와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⁴⁾).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 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은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것으로, 그 자체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총계약기간의 계약상 구속력 부재를 근거로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았음⁵⁾).

4) 한편,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의 경우 하위 법령에서 장기계속계약이 포함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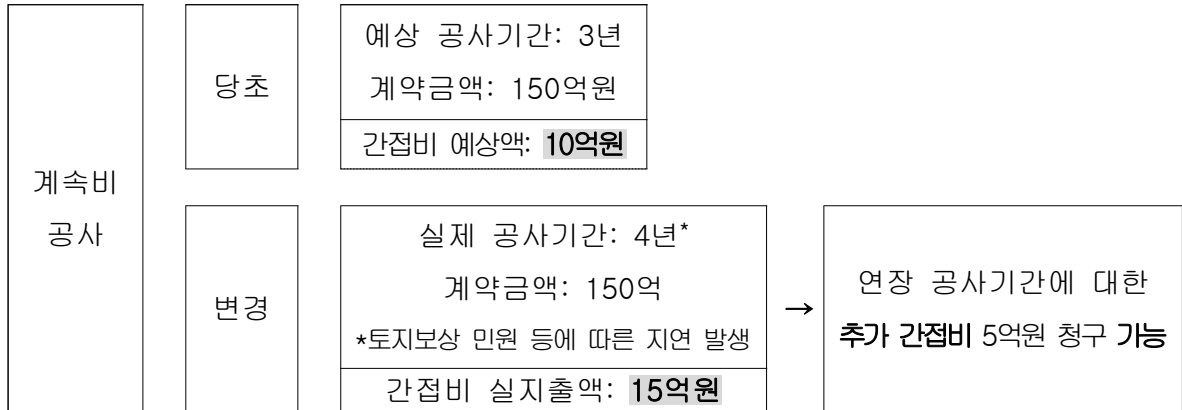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5) 따라서 위와 같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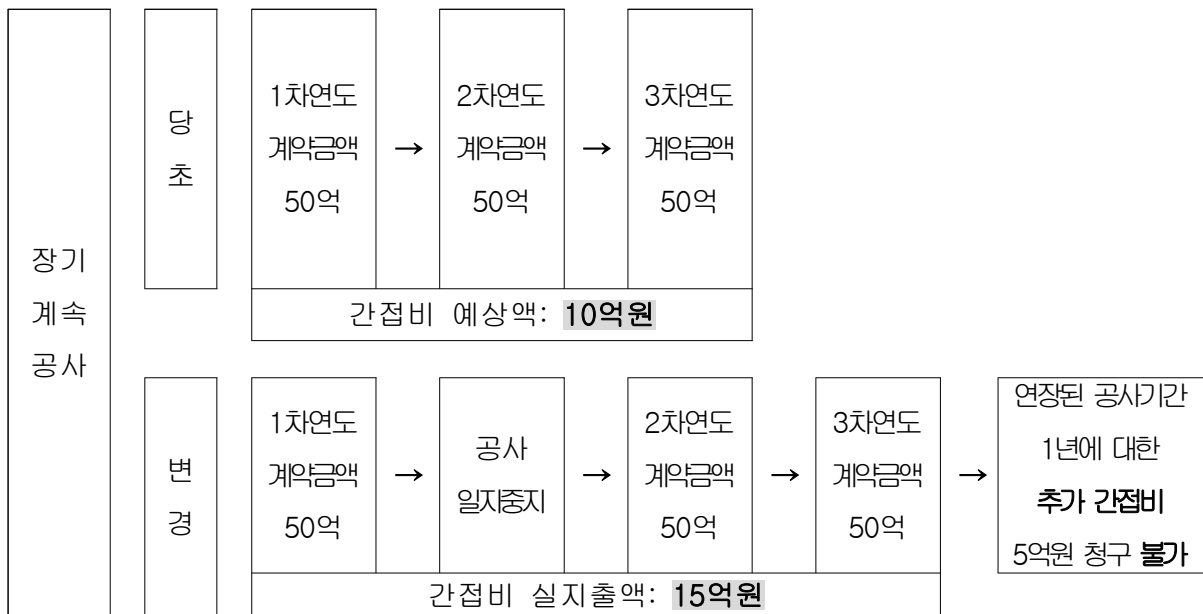
(이하 중략)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즉,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의 구속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임⁶⁾.

<계속비계약에서의 총공사기간 변경>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공사기간 변경>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6) 특히,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동 판결 이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급하던 사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차수 예산의 미확보, 토지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연차 계약 간 공백기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기간 연장에 수반되는 추가적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에 관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연장 사유를 계약상대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에서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하면서, 장기계속계약공사의 총계약기간 연장 또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총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비용증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총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부담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⁷⁾, 개정안을 통해 현행 법령상 계약구조의 불평등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에 대해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를 발주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발주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음⁸⁾.

7) 계약상대방은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권리는 연차별계약금액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 지적되고 있음 (김대인,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연구 제61호』, 사단법인 행정법이론 실무학회, 2020년 5월)

8)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화된 제도다. 즉, 계약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계약기간의 변경을 총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률로 총계약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특성상 총계약기간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의 취지⁹⁾¹⁰⁾, 유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가 재정 여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점¹¹⁾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는데도 원래의 계약금액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된다. 그런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공사업체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공사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주자가 연차별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발주자는 연차별 계약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필요 없이 연차별 계약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자는 간접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총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이러한 해석은 발주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다수의견은 결국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예산 집행의 경직성 및 국회의 예산심사권 침해 등 계속비계약이 지닌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의 위험을 공사업체에 전가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9) 당시 대법원은 장기계속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계약금액과 총계약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추진되므로 연차별 계약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인정되며 총계약기간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10) 한편,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총괄계약이 연차별계약에 영향을 미쳐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 장기계속공사를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 판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되었음.
(정영철,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구성」, 『공법연구』 제48집제3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20.2., pp324-329)
- 11)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총계약기간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이라는 장기계속계약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법원도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법적 구속력을 부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북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70호) 10p 참조

둘째, 개정안은 계약 금액 조정 사유를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서 “책임없는 사유”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금액조정 사유 변경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계약의 이행·해지 여부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계약 해제·해지 등의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¹²⁾하면 “책임”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계약상대방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책임 유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쟁송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임.

반면, “통제범위”라는 개념은 주관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나 계약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조정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임.

한편, 현행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자연재해, 전쟁, 주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등 사유임¹³⁾.

12)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

<헌행법령에 따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구분	내용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 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재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밖에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 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계약기간(제24조제1항1호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보임.

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재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

구체적으로, 「지방계약법」 제24조 각호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의 유형을 장기계약공사와 계속비공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계약 유형에 계속비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장기계약공사 및 계속비공사 외의 계약 유형이 있다면 해당 유형이 포함되거나 제외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넷째, 국가계약과의 법적 정합성 차원에서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2건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¹⁴⁾의 심사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발의 되었고 제20대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되었는데, 당시 법안소위 논의 시('19.11.28.) 기획재정부에 업계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뒤 논의가 종료되었음¹⁵⁾¹⁶⁾.

한편, 22대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2건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안 '24.12.30.발의, 송언석의원안 '25.2.20.발의)과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계약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총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상대방이 부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장기계

14)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070호 /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312호

15) 제20대국회 제371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2019.11.28.) 회의록 참조

16) 제21대 국회에서는 전체회의 상정 이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전체회의 상정 이후 소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상황임

속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동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 및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¹⁷⁾.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연차별 계약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의 보전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현행 법령체계상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건설업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발주자 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은 입법 미비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17)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을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실상 총계약기간에 법적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이라는 장기계속계약 제도의 취지를 저해하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대법원도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법적구속력을 부정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의안번호 제2207070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p10).

문 의 처

02)6788-5337
